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술감사[토목, 건축]분야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술감사(토목, 건축)분야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3년 3월 22일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



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임용분야	임용등급	채용인원	근무기간	근무예정처	직무내용
기술감사	임기제 지방시설 주사보	토목 1명 건축 1명	1년	서대문구 감사담당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설공사 등 기술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○ 일상감사에 관한 업무 ○ 계약심사에 관한 업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설공사, 용역, 물품 계약심사 - 설계 및 시공 공법의 적정성 검토 - 신기술·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- 시설공사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- 용역(건설기술, 학술연구, 일반)분야 적정성 검토 - 거래실례가격 조사 및 DB구축 - 계약 관련법 검토 및 계약심사 사례연구 등

※ 사업의 필요성과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

2. 법령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
- 지방공무원 임용령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규칙

3. 응시자격 요건

☐ 공통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『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※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※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

※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- 연령, 지역, 성별 : 만 20세 이상인 자로 지역, 성별 제한 없음
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☐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임용분야	응시자격 요건
임기제 7급 (기술감사 분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<u>토목 또는 건축 기사 이상 자격증소지자</u>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 관련분야 실무경력 및 자격 인정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또는기업체의 토목(건축)분야 근무경력 -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명시 ※ 우대사항 : 관련분야 5년이상 근무시

※ 유의사항 : 공무원 실무경력의 경우 『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』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.

4.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

☐ 보수 및 수당

○ 연봉액 : 46,006천원

-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.

○ 수당은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※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(단,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☐ 근무조건

○ 근무시간 : 주당 40시간

○ 복무기준 : 『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』 및 『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』 준용

5.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

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3. 4. 6.(목) ~ 4. 10.(월), <평일3일간 09:00~18:00, 중식시간 제외>
- 접수방법 : 직접 방문접수(우편·팩스·인터넷 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)
- 접수처 : 서대문구 감사담당관 (본관 4층)
 - 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
 - ※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(인증기 인증)를 붙이지 않는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
시험일정

내 용	일 정	비 고
채용공고	2023. 3.22.(수)~4. 5.(수)	○ 서대문구 홈페이지, 관련분야 홈페이지 공고
원서교부 및 접수	2023. 4. 6.(목)~4.10.(월)	○ 방문접수 (서대문구청 4층 감사담당관)
1차 서류전형	2023. 4.12.(수) 예정	○ 서면심사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3. 4.13.(목) 예정	○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○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고
2차 면접시험	2023. 4.14.(금) 예정	○ 일시 및 장소 등 별도 공지
면접시험 합격자 발표	2023. 4.17.(월) 예정	○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○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고

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
※ 인사발령 예정일자 : 2023.05.01.일자

1차시험(서류전형)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
- 단,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.

2차시험(면접시험)

-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
- 『지방공무원 임용령』(이하 “령”) 제44조에 따라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·중·하 평가 다만, 필요한 경우 평정요소 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.
(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)

○ 불합격 기준

-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영 제44조제3항 평가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하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“하”로 평정하였을 때

○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(평정 성적이 동점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우대사항이 높은 순으로 결정)

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6. 제출서류

응시원서 1부

○ 응시수수료 : 7,000원(서대문구청 1층 민원여권과)

※ 응시원서 접수당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

이력서 1부

○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

○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등) 등 기타 증빙자료 제출

자기소개서 1부

직무수행계획서 1부

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 1부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1부

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(원본), 학위증서 사본 1부

○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○ 사본 제출 문서의 경우 최종합격 시 원본(대조 확인용) 제출

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(원본)

○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
○ 비상근,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

○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

직무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'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붙임 7)'추가 제출

자격증 사본 1부 (원서 제출시 원본 지참)

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해당자에 한함)

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첨부
- ※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,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
- ※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7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(단, 원본 제출서류의 경우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반환)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)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(없을 경우 포함) 또는 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서대문구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 담당(유관성 ☎ 02-330-1494)